

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

화제예방, 범죄예방 등 사전 안전 및 보안 등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기록보존)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, 노인학대 방지,

체외하고는 이 기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정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
제3조(적용범위) 미카연 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

면 재생하는 해위를 말한다.

4. "정보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

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3.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

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2. "화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원성 여부를 확인

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
1. "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

제1조(목적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

제1장 총칙

미카연 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

※ 본 서식은 예시로서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가능,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·운영의 경우도 적용해서 사용

[별지 제 1호 서식]

5.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상담실에 있는 DVR
4. CCTV 저장 : 130만 화소 이상(1,280x960), 초당 10 프레임
3. CCTV 정보 보관기간 : 60일
2. CCTV 촬영 : 24시간 상시 촬영
1. CCTV 성능 : HD급(130만 화소)

다음과 같다.

제7조(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)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

1. CCTV 운영 모니터
 2. 다지텔 녹화기
 3. 그 밖의 부대장치
-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상담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안내판을 외부 출입문에 설치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
3. 외부공간 - 층상 3
 2. 공용공간 (1층 복도 4, 2층 복도 5, 3층 복도 5)
 1. 1층-10대(주방2, 복도4, 방4), 2층-22대(방17, 복도5), 3층-22대(방17, 복도5)

제6조(CCTV 설치)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.

3.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결합 수 있다.
-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
다. 모니터링(담당)자: 이진영
나. 운영(담당)자: 김현진
가. 책임자: 조진형
1. CCTV 설치·운영 관리책임자

지정한다.

제5조(책임자 지정) CCTV 설치·운영 관리책임자(이하 '책임자'라 한다.)를 다음과 같이

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원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
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
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
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
제10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)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거나 하는

6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- 공의를 얻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4.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
없는 행태로 제공되는 경우
 3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
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-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
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
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제9조(화상정보 처리 제한)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

3.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
 -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 2.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-in)
 1.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-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CCTV 사용 제한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

7.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: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
6.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: 상담원

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해야 한다.

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(정보통신망 포함)을 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따른 정정(삭제)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수 있으며,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할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

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

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
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
3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

2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

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
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(화상정보)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

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

제15조(사무의 위탁)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·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

제4장 목적

⑤ 마땅대로 불수령금

④ 열람 요청서 및 본인 신분 확인 서류 필요함

③ 운운 기관에서의 범죄 수사 및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청

② 보호자가 여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기위해 신청

① 여르신 본인의 생명, 신체 등 이익을 위해 신청

제15조(열람가능사유)

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

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결과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장비관리)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·

60일 이상으로 하며,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표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.

제13조(화상정보 보관 관리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

보보호를 위한 고품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

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.

하여야 한다.

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

제12조(화상정보 보호 조치)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

4. 그 밖에 정정·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근 경우

3.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

경우에 화상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도록 필요 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7조(중용규정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보건복지부)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, 「행정절차법」 등을 준용한다.